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9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○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(법률 제8989호, 2008.3.28, 공포·시행)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용어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함(안 제9조)
 - 학원(교습소)의 경우에는 휴원, 폐원을 교습정지, 등록말소(폐지)로
 -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로 함
- 인용 조문을 개정함
 -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로 함(안 제2조의3, 제2조의4)
 -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함(안 제9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함

5. 검토의견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안 제9조에서 행정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휴원과 폐원을 학원은 “교습정지”, “등록말소”, 교습소는 “교습정지”, “폐지”로,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“교습중지”로 개정하였으며,

○ 안 제2조의3, 안 제2조의4, 안 제9조의2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정비와

○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